

의안번호	제 1008 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발의자	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3월 7일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08
----------	------

발의연월일 : 2022년 3월 7일
발 의 자 : 이상욱, 박형용, 이숙애,
이의영, 장선배, 허창원,
송미애

1. 제안이유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 정의, 적용대상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함. (안 제4조)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함. (안 제6조)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8조)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2022. 3. 10. ~ 2022. 3. 15
- 다. 협 의 : 복지정책과
- 라.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지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 마다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실행 계획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중

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상담·현장컨설팅 사업 등 추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교육·홍보·현장컨설팅 사업 추진

연 번	사업명	내역	
		지원내용	예산
1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5년간의 보육정책 추진 여건 분석, 과제 설정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 시 연계 추진)	45,000천원
2	위원회의 설치·운영	분기별 1회 회의(수당 100,000원×4회×14명)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시 연계 추진)	5,600천원
3	상담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5명)이 보육교사심리적·정서적 고충상담, 아동학대 예방관련 업무수행(기 시행중)	139,306천원
4	다문화영유아취약보육지원	다문화·장애아·연장 보육프로그램을 통해 보육교사 역량 강화(기 시행중)	10,000천원
5	표준보육과정 교육 및 컨설팅	보육과정 컨설팅, 표준보육과정 심화교육, 재무회계 인사 노무 현장 컨설팅(기 시행중)	10,000천원
6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의심 건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진행(기 시행중)	10,000천원
7	종사자 역량 강화	정부 보육정책 운영 방향 공유 및 안심보육 환경조성 등 정보교류(기 시행중)	20,000천원
8	보육교직원 연수	직급별 교사 역량강화교육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교육(기 시행중)	10,000천원

나. 추계 결과 :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3.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204,906	209,085	213,390	217,823	267,390	1,112,594
도 비	204,906	209,085	213,390	217,823	267,390	1,112,594
세 출	204,906	209,085	213,390	217,823	267,390	1,112,594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	-	-	45,000	45,000
위원회의 설치·운영	5,600	5,600	5,600	5,600	5,600	28,000
상담전문요원	139,306	143,485	147,790	152,223	156,790	739,594
취약보육지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교육 및 컨설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아동학대 예방교육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종사자 역량강화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보육교직원 연수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지원 비용	0	0	0	0	0	0
재원 조달	204,906	209,085	213,390	217,823	267,390	1,112,594
자체 수입	소 계	0	0	0	0	0
	지방세	204,906	209,085	213,390	217,823	267,390
	세외수입	0	0	0	0	0

※ 상담전문요원은 인건비로 연도별 임금인상율은 3%로 가정